

기 안 용 지

환경위생계

분류기호	보행 1436	7766 (전화번호 72-2637)	결결규정 3 조 1 항 쿠 장 전결사항
처리기관	보건사회부장		
시행일자	(Handwritten mark)		
보존년한	(Handwritten mark)		
보조	보건행정과장	협조	조
조	환경위생계장		
기			
관			
기안책임자	장 우 순 73. 8. 4		87 서울특별시 환경위생계
경유	사사 5-13	발신	통계
수신			검열 1973. 8. 7 서울특별시 환경위생계
참조			
제목	식용얼음 제조용수에 대한 질의조부 등지		
	1. 식용 1436~4682 (73. 8. 1) 호의 관련일		
	2. 위래호로 보건사회부장관 과 제주도지사와		
	다음과 같은 질의조부이 있었으니, 업무에 착도 없도록		
	할 것		
	질의요지: 식용얼음 제조업소에서 얼음을 제빙관에서		
	분리 사용할 때 사용하는 물도 식용위생법 시행규칙 별문		
	2. 3제조업 가공처리업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제		

0-2-0-1-1-8A

190mm×268mm, 배상지 40g/m²

1969. 11. 10. 승인

12항의 추정에 의한 수토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응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오지 : 식품영업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수, 라할은
원료 용수는 물론이고 기타 식품제조 가공에 사용하는 일체의
물을 말함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공급되는 물을 그 용도에
불구하고 전부 상수도 불이거나 공공시험기관에서 응용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것

식품 1436- 4622

73.8.1

수신 나 1 - 10

제목 식음얼음 제조용수에 대한 질의조복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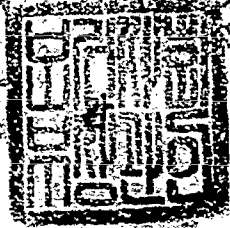
1. 당부와 제주도지사간에 아래와 같이 질의 조복이 있었음을 통지하니 업무에 참고 하것.

질의요지 : 식음얼음 제조업소에서 얼음을 제빙관에서 본리 할때 사용하는 물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조업가공처리업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 기준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물 또는 공공 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어야 하는지의 여부 ?

회시요지 : 식품영업소의 시설기준에 정한 "급수" 라함은 원 료 용수는 물론이고 기타 식품제조 가공에 사용하는 일체의 물을 말하 므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공급되는 물은 그 용도에 불구하고 전부 상 수도 물이거나 공공 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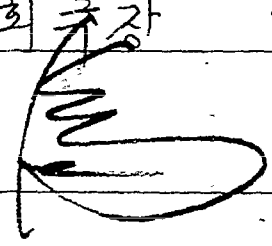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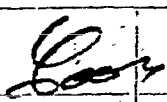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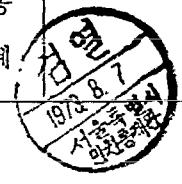


끝

문 서 처 리 인	접수	서울특별시	전결	장
	일시	1973. 8. 3.	결	소장
	접수번호	7060	접수처기	일상용



기 안 용 지

환경위생계

분류기호	보행 1436	(전화번호 72-2837)	결정규정 3 조 1 항	1768	국장 전결사항
처리기관	보건사회국장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	보건행정과장		관		
조	환경위생계장		조		
기					
관					
기안책임자	장두순 73. 8. 4.				
경유	각안참조	발신			
수신		통계			
참조					
제목	미취질의 처리				
제 1 안					
주 신	지내 동과문구 용두동 33-15 (6동 9번)				정 서
	이 상 우 처 하				(인)
제 목	동 건				관 인
	1. 처하가 결의하신 식음제로 영내 대한				
	업종 해소에 대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발 송
	시동 1436~102148 (73. 7. 28) 호로 다음과 같이				

0201-1-8A

190mm×268mm 배상지 40g/m²

회시 되었기 양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쌀을 볶아 분쇄하여 주교 수수료를
받은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식음위생법

시행령 (제9조 제3호에 정한 식음 가공업에 해당
됨) 으

제2항

우선 우선처 함으로

제부 록 건

1. 보건사회부장관과 동대문구 용두동 233-1
(6동 1반) 이상우와 다음과 같은 질의 응답이 있었어
업무에 참고 할 것

가. 쌀을 볶아 분쇄하여 주교 수수료를 받은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식음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3호에 정한 식음 가공업에 해당됨)

첨부 질의서 사본 1부 으

우선처 사사 5-13

민원서류
처리기한

보건사회부

식품 - 1436 - 102148

73. 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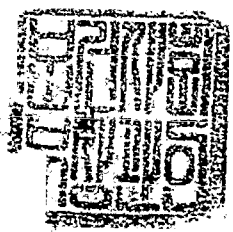
수신 서울특별시
제목 민원질의 처리

1. 귀 관하 동대문구 용두동 233-15(6통 9반)의 상누로 부속 별첨과 같이 식품영업에 관한 질의가 있어 이첩하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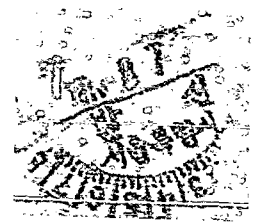
가. 쌀을 볶아 분쇄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30호에 정한 식품가공업에 해당됨.

첨부 : 질의서 사본 1부. 끝.

문서처리인	접수	서울특별시	전결	5963
	일시	1973. 8. 3.	과	
	첨수번호	104038	과장	



부감



보사부 장관님께

유신사업 수행에 얼마나 수고 하십니까 ?

소인은 시장에서 참기름 장사를 하고 있는(허가있음) 상인입니다.

제가 여가를 이용하여 참기름을 볶는 솥에 닭 미수 가루를 빻으러 오는 아낙네들의 쌀을 빻아 주고 있는데 미수 가루를 빻아주는 기계를 설치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응해서 쌀을 처리해 주는 것이 혹시 위법이 아닐까 염려되어서 이것에 대한 법 해석을 듣고져 합니다. 전번에 지상보도를 듣기로는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고추를 분쇄해준 업자의 재판에 대한 결과가 무죄임 이라는 법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고객의 요구에 의한 행위가 위법이 되는지 장관님의 현명하옵신 해석을 보내려 수옵시기 앙망하나이다.


1973. 7. 23.

동대문구 용두동 233의 15호 6통 9번

이 상 우 드림.

보령

민원서류 의 사

차관:  1973. 8.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유. 보건 행정 과장
 제부. 식품가공허가 취득에 관한 질의.

1. 보인은 농산물인 깨 (참깨)를 볶아서 다른 첨가물의 혼합 없이 깨만은 볶아 깨소금으로 만들어 판매코자 하오니 하교 하여 주시기 앙당하나이다.


기

- (1) 본 제품도 식품가공허가를 취득해야 되는지요?
- (2) 허가를 취득하여야 할 때의 소관 관청은 어디 인지요?

질의자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림동 149-56

문서	접수	서울특별시	전체	총	내
처리	일시	73. 8. 6.	서	관	주
의인	접수번호	이776	1102		



첨부: 식품 제조업 허가 및 위생관리요령 응문사본 1부 증
제 2 안

추천: 법무과장 인사과장

제부: 등 건

1. 식품 제조업 허가 및 위생관리요령을 별첨
응문 사본과 같이 시행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
나

첨부: 식품 제조업 허가 및 위생관리요령 응문사본 1부 증
제 3 안

추천: 보건사회부장관

참조: 위생관리관

제부: 등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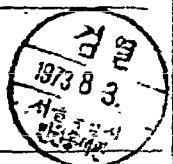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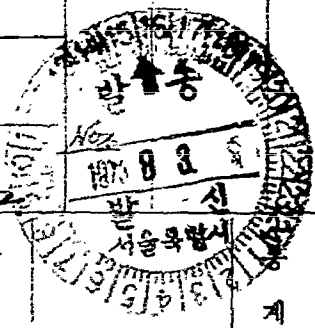
1. 식품 위생법 시행령을 개정령 (대통령령 제 6741호
73. 6. 23) 에 따라 별첨 식품제조업 허가 및 위생관리
요령을 마련 강구 보건소장에게 시달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첨부: 식품 제조업 허가 및 위생관리요령 응문사본 1부 증

기 안 용 지

화성위생회

분류기호 문서번호	1436 (정회번호 72/9441)	결정규정	3 조 1 항
처리기관	화성위생회 과장		
시행일자			
보존년한	60598, 3		
보조	화성위생회장		
기			
관			
기안책임자	최원식 73. 8. 2		
경유 수신 참조	원취장조	발신	1973 8 3 서울특별시 서문구청 보건과
제목	식품제조업소 허가 대장 등록		
1. 호정 1436-14326 (73. 2. 31)와 관련된 2. 대장에 의하여 내부위원단 식품제조업 (식품제조업소 인노관의 정정음료 제조업소 대장은 73. 2. 21 판까지 회의시 내부) 허가 대장을 등록하되 내부 에 관해 등록할 것 3. 허가대장 등록 부서서 시. 5 - 13			



정서
관인
발송

0201-1-8A

190mm×268mm 백상지 40g/m²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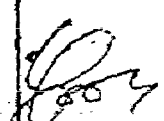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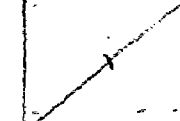
수용제도연노 양주에 따른 회의 사항을 다음
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장소: 지리 청정실
2. 시간: 73. 7. 31. 16:00 - 17:30.
3. 회의내용: 수용제도영업 허가 및 위생관리요령
시달
4. 기타:

가. 호평 1436-1326 (73. 7. 31) 로 수용제도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요령 공문 배부.

나. 수용제도영업 허가 대장 (홍정환, 이노환, 이
영환, 이영진) 배부

전후 관공의 명단 1 부

환경위생계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사회국장	공 람
			

73. 7. 31.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지방부지사

최원수



수용제도연노 양주

조선지명판

부속	직	심명	서명	비고
충주부인소	지방행령부사	이경희	이경희	
"	"	이종은	이종은	
충주부인소	"	조상권	조상권	
"	"	노래천	노래천	
"	"	김경인	김경인	
충주부인소	"	이래기	이래기	
충주부인소	"	전병석	전병석	
"	"	유대성	유대성	
충주부인소	지방행령부사	이경희	이경희	
"	지방부사	김남선	김남선	
충주부인소	지방행령부사	강래익	강래익	
"	"	박관례	박관례	
충주부인소	지방행령부사	이병욱	이병욱	
"	지방부사	김기응	김기응	
충주부인소	"	송영섭	송영섭	
"	"	김종범	김종범	
충주부인소	"	신우현	신우현	
"	"	정태규	정태규	

청년통신문

보행 1436

주신 각구보건소장

참조 위생과장

제목 식품제조업소 업무에 따른 지시

1.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하시 시간업무
참석할것

다 음

- 가. 회의 안건: 식품제조업소 허가 및 관리지침
- 나. 참석 범위: 환경위생계장, 제조업소 담당자
- 다. 일 시: 73. 7. 31. 16:00시
- 라. 장 소: 보건행정과 지하 행정실

끝

주대론 김 일 흥
 상 북 백 영 키
 영 등 박 천 숙

부 전 지

수 신 보건행정국장 1973. 7. 30.

제 목 서울역로 철도역가설 허생권기호법

요 약 귀안 서울특별시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각부기관에 내부 위임하고자 할 경우는 서울특별시사무
회임규칙 (규칙 제1075호 70. 9. 1)을 개정하여 처리
할 것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발 신

0 1 2 3 4 5 6 7 8 9 0

